

-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년 12월 5일

나. 제안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0년 12월 5일

라. 상정일자 : 2000년 12월 9일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폐기물관리과장 강 대 원

나.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99. 2. 8. 법률제5865호)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확정된 규제정비계획을 반영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 의료법(보건복지부)에 의하여 관리하던 감염성 폐기물이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 의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 정의 ⇒ 신설
-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 삭제
- 제17조(폐기물투기금지) ⇒ 삭제

라.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조, 제1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윤 구

- 이 개정 조례안은 '99. 2. 8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사료되며,
- 휴게소 영업자 등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를 의무 규정한 조례 제15조의 제정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와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고, 조례제17조 폐기물투기금지조항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기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개정안중 조문표현의 정확성이 결여된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조례내용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하겠음.

· 개정안 제5조 제3항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를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수수료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로 하여 수수료반환 객체와 동기 및 반환주체를 구체화하고

·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3호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 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을 말한다) 이하 배출하는 사업장 을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 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을 말한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으로 하여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중복됨을 배제하고

· 개정안 제6조 제3항

- 제1항 제3호에 의거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는 [별표1]의 일시적다량 배출물 수수료를 적용한다 를

→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는 [별표1]의 일시적 다량 배출물 수수료를 적용한다 로 하여 수수료 부과 대상물을 명시코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